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1월 26일

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김 종 율

나. 제안이유

- 산동면 읍승격 및 비산동·공단1동 행정동 통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직급별 정원 조정

다. 주요내용

- 직급별 정원표 조정(안 별표 3)
 - 일반직 계 : 1,755명(변동없음)
 - 5급 : 91명 → 90명(△1명)
 - 6급 이하 : 1,645명 → 1,646명(+1명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9조 및 제30조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정 은

○ 본 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산동면 읍 승격 및 비산동·공단1동 행정동 통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, 일반직 5급 1명을 감원하고 6급 이하를 1명 증원하는 내용임.

○ 검토 결과,

-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,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